

고베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해소와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에 관한 조례

이제 다문화공생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공통의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적, 인종, 문화, 종교 등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방지, 해소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공생의 과실은 이미 우리 고베시민의 주변에 있다. 1868년의 개항 이래, 고베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내방하여 함께 도시를 만들고 일을 하여 고베의 경제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독자적인 다문화공생의 생활문화를 만들어왔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의 교류 없이 오늘의 고베라는 도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최근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로부터의 관광객 및 유학생의 증가는 일본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업종, 업계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는 와중에,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해외로부터의 인재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보건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본을 방문하며, 또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지 않으면 고베시는 물론이고 일본사회가 지속해나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본 시가 2016년 3월에 책정한 고베 2020 비전에서도, 모두를 포용하고 그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힘을 발휘가능하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만들기를 목표로 해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고베시가 세계에 열린 도시로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비롯한 일체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시민이 각각의 문화를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시민경제의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목적)

제 1 조 이 조례는 표현의 자유, 그 밖의 자유 및 권리를 보장하는 일본국헌법을 준수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각각의 문화를 서로가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공생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노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책을 정하여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이 조례에서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2014년 정령 제 319호) 제 2 조 제 2 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민의 책무)

제 3 조 시민은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이 존중되는 도시 만들기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상담체제의 정비)

제 4 조 시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관한 상담에 적확히 응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의해 필요한 상담체제의 확충에 힘쓴다.

(교육의 충실 등)

제 5 조 시는 국가 또는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필요한 노력을 행하도록 힘쓴다.

(계발활동 등)

제 6 조 시는 국가 또는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의해서,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에게 주지하고 그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및 그 밖의 계발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행하도록 힘쓴다.

2 시는 국적 및 민족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공생사회를 실현한다는 시점에 서서 다문화공생의 기초가 되는 인권계발을 추진하도록 힘쓴다.

(정보제공)

제 7 조 시는 외국인에 대해 일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적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재정상의 조치)

제 8 조 시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의회에의 보고)

제 9 조 시장은 매 년도 이 조례에 의거한 시의 시책의 실시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